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효력발생일:** 2026년 08월 25일(화)

□ 대상 펀드

- 1) AB 월지급 글로벌 고수익 증권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2) AB 월지급 미국 그로스 증권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3) AB 월지급 미국 인컴 증권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4) AB 미국 인컴 증권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5) AB 글로벌 로우볼 증권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 1) AB 월지급 글로벌 고수익 증권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정기결산에 따른 갱신		자료 업데이트
- 투자실적추이 - 운용전문인력	정기결산에 따른 갱신		자료 업데이트
환매방법	환매주기 변경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8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5영업일(D+4)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6 영업일(D+5)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분배금		3. 분배금 지급일: 분배기준일로부터 제5영업일 에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3. 분배금 지급일: 분배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 에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정기결산에 따른 갱신		자료 업데이트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변동성 재 측정		자료 업데이트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환매주기 변경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림 (주1)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그림(주2)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D+4)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림(주1)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6영업일(D+5)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그림(주2)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환매주기 변경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7영업일)전의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4영업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5영업일)전의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정기결산에 따른 갱신		자료 업데이트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3. 분배금 지급일: 분배기준일로부터	3. 분배금 지급일: 분배기준일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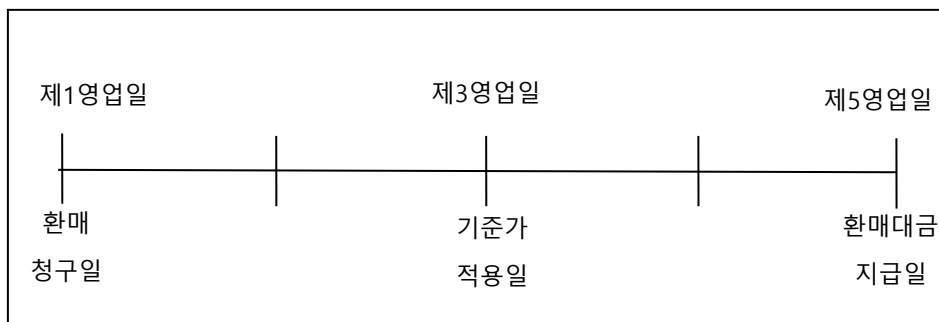
나. 분배금 (1) 분배금 지급 방법		<u>제5영업일</u> 에 분배금을 지급한다.	<u>제3영업일</u> 에 분배금을 지급한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정기결산에 따른 갱신		자료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정기결산에 따른 갱신		자료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정기결산에 따른 갱신		자료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정기결산에 따른 갱신		자료 업데이트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정기결산에 따른 갱신		자료 업데이트

주1)

정정전:



정정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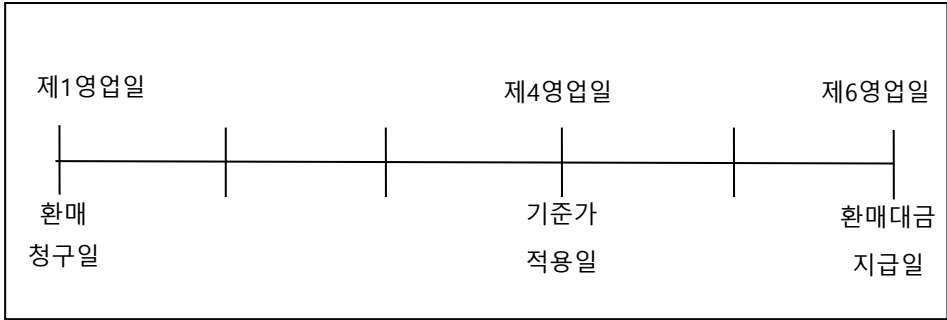


주2)

정정전:



정정후:



2) AB 월지급 미국 그로스 증권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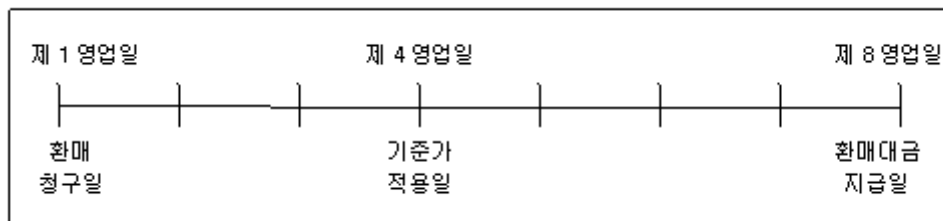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정기결산에 따른 갱신		자료 업데이트
- 투자실적추이 - 운용전문인력	정기결산에 따른 갱신		자료 업데이트
환매방법	환매주기 변경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8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6영업일(D+5)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7 영업일(D+6)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분배금		3. 분배금 지급일: 분배기준일로부터 제5영업일 에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3. 분배금 지급일: 분배기준일로부터 제4영업일 에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정기결산에 따른 갱신		자료 업데이트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변동성 재 측정		자료 업데이트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환매주기 변경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 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u>그림 (주1)</u>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 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u>그림(주2)</u>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6영업일(D+5) 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u>그림(주1)</u>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D+6) 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u>그림(주2)</u>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환매주기 변경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7영업일)전의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5영업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6영업일)전의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정기결산에 따른 갱신		자료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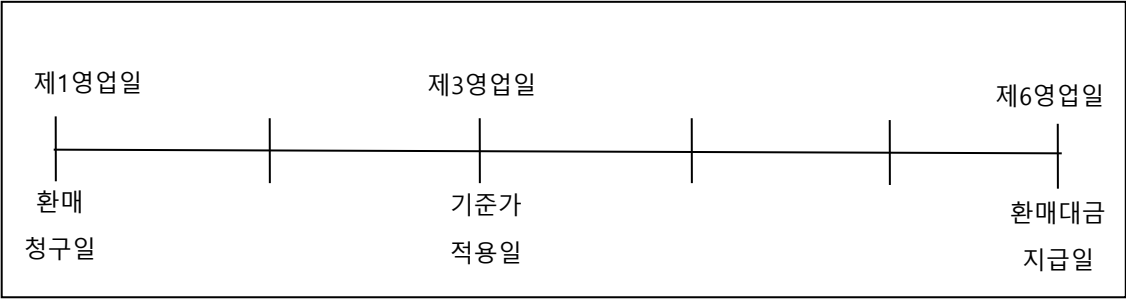
비용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분배금 (1) 분배금 지급 방법		3. 분배금 지급일: 분배기준일로부터 제5영업일 에 분배금을 지급한다.	3. 분배금 지급일: 분배기준일로부터 제4영업일 에 분배금을 지급한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정기결산에 따른 갱신		자료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정기결산에 따른 갱신		자료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정기결산에 따른 갱신		자료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정기결산에 따른 갱신		자료 업데이트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정기결산에 따른 갱신		자료 업데이트

주1)

정정전:



정정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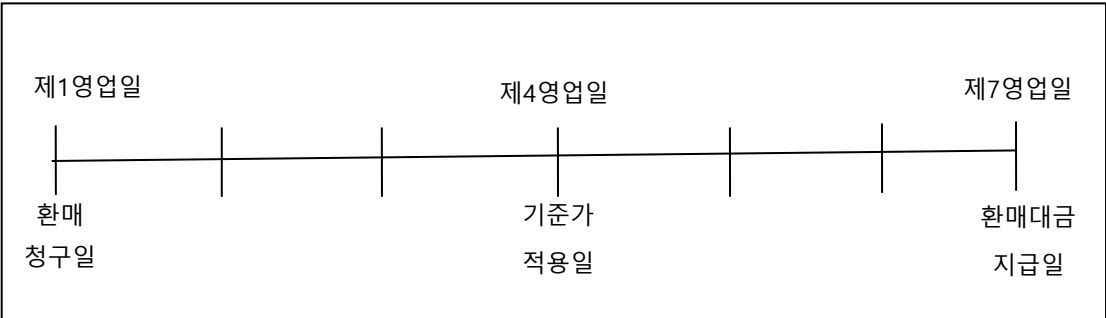


주2)

정정전:



정정후:



3) AB 월지급 미국 인컴 증권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요약정보			
환매방법	환매주기 변경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8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6영업일(D+5)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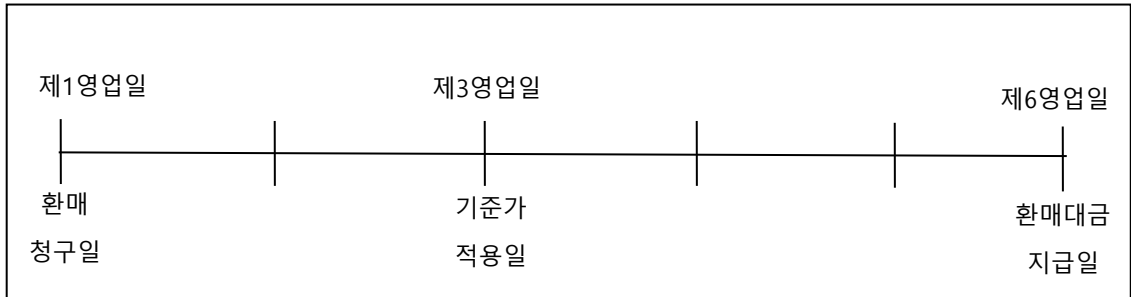
		제9영업일(D+8)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제7영업일(D+6)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분배금		3. 분배금 지급일: 분배기준일로부터 제5영업일 에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3. 분배금 지급일: 분배기준일로부터 제4영업일 에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환매주기 변경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림 (주1)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그림(주2)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6영업일(D+5)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림(주1)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D+6)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그림(주2)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환매주기 변경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하는 경우에는 7영업일)전의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5영업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하는 경우에는 6영업일)전의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분배금 (1) 분배금 지급 방법		3. 분배금 지급일: 분배기준일로부터 제5영업일 에 분배금을 지급한다.	3. 분배금 지급일: 분배기준일로부터 제4영업일 에 분배금을 지급한다.

주1)

정정전:



정정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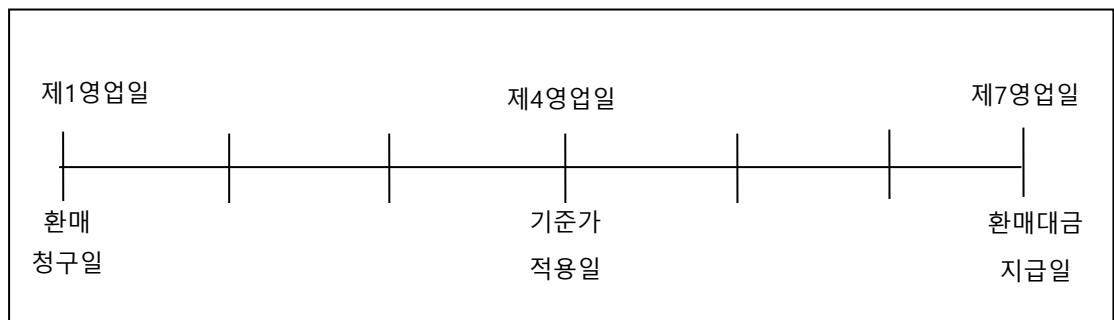


주2)

정정전:



정정후:



4) AB 미국 인컴 증권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요약정보			
환매방법	환매주기 변경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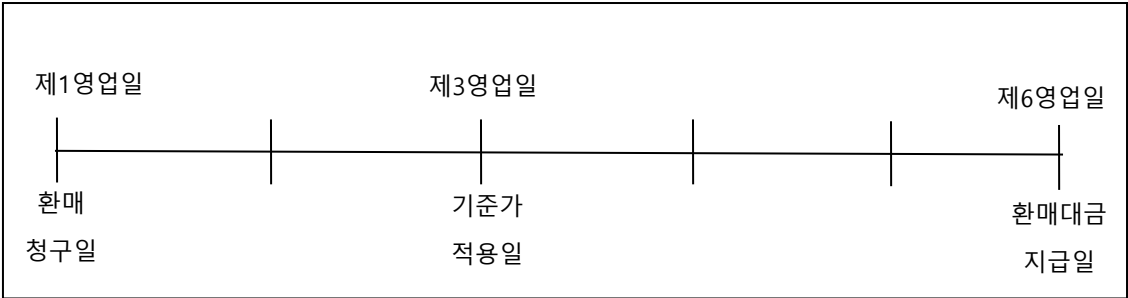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8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6영업일(D+5)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7영업일(D+6)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환매주기 변경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림 (주1)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그림(주2)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6영업일(D+5)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림(주1)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D+6)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그림(주2)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환매주기 변경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하는 경우에는 7영업일)전의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5영업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하는 경우에는 6영업일)전의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주1)

정정전:



정정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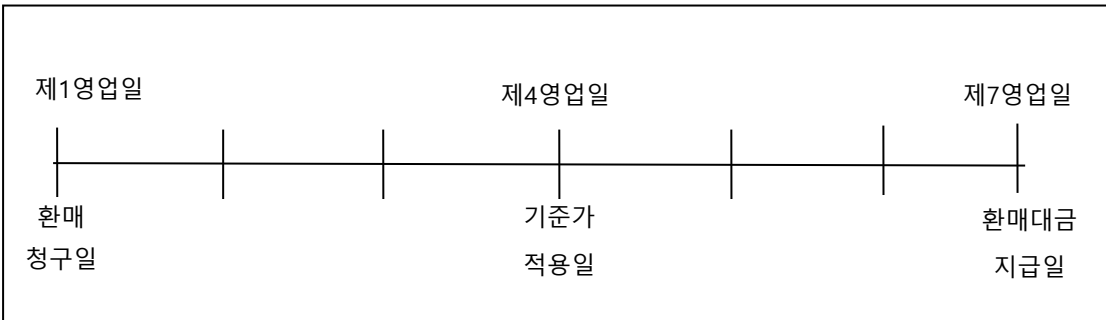


주2)

정정전:



정정후:



5) AB 글로벌 로우볼 증권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요약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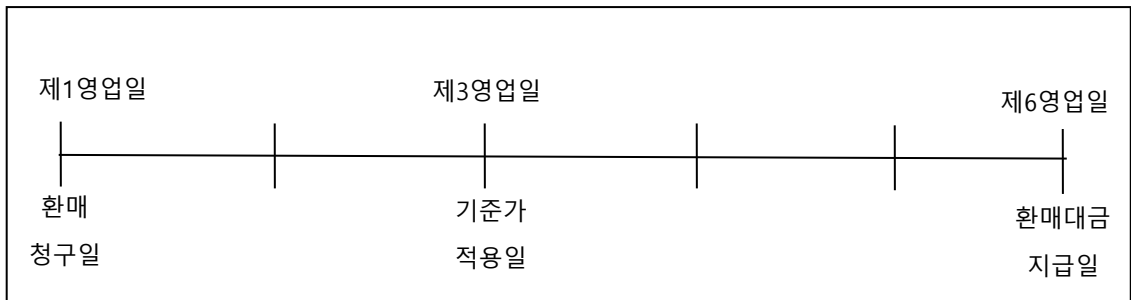
환매방법	환매주기 변경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8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6영업일(D+5)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7영업일(D+6)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환매주기 변경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환매대금을 지급합 니다. 그림 (주1)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 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 여 제9영업일(D+8)에 환매대금이 지 급됩니다. 그림(주2)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6영업일(D+5)에 환매대금을 지급합 니다. 그림(주1)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 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 여 제7영업일(D+6)에 환매대금이 지 급됩니다. 그림(주2)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환매주기 변경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 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 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 한 날의 6영업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하는 경우에는 7영업일)전의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 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 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 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 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 한 날의 5영업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하는 경우에는 6영업일)전의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 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 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주1)

정정전:



정정후:



주2)

정정전:



정정후:

